##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85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김미애·김민전·이달희

김위상 · 김기현 · 주호영

박성민 • 박상웅 • 김 건

진종오 · 임이자 · 이종배

김정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 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 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율"을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	
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	
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	
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u>비율</u> 을 곱	<u>비율(소수점</u>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u>다)</u>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